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 사유(공사완료 공고) 추가 등〉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16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 사유(공사완료 공고) 추가	3
2. 지원금 환수 시 준용규정 수정	11
3. 부칙(시행일)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15.

3. 회 부 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가공·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과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이 완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해당 구역에서 계속하여 행위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과오지급된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에서 2021년부터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징수의 경우 그 근거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 해제 사유에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에 있어 일선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 사유(공사완료 공고) 추가

개정안은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정 해제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 관계 조문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활용사업의 공사준공으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현행법 제13조¹⁾에 따른 행위 제한을 불합리하게 받지 않도록 구역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사완료 공고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2) 한국농어촌공사

개정안에 따라 사업 준공 이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사업구역 내 행위 제한이 해제되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을 수용함.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 <2017. 2. 28.>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검토의견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제도 현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간척지 개발 사업에 관하여 이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정의하고,²⁾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 사업을 위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그 지정 및 사업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현행법 제9조⁴⁾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공고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함. ② 간척지활용사업의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aT 등)를 결정함.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④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음. ⑤ 조성된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처분함.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간척지활용사업”이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란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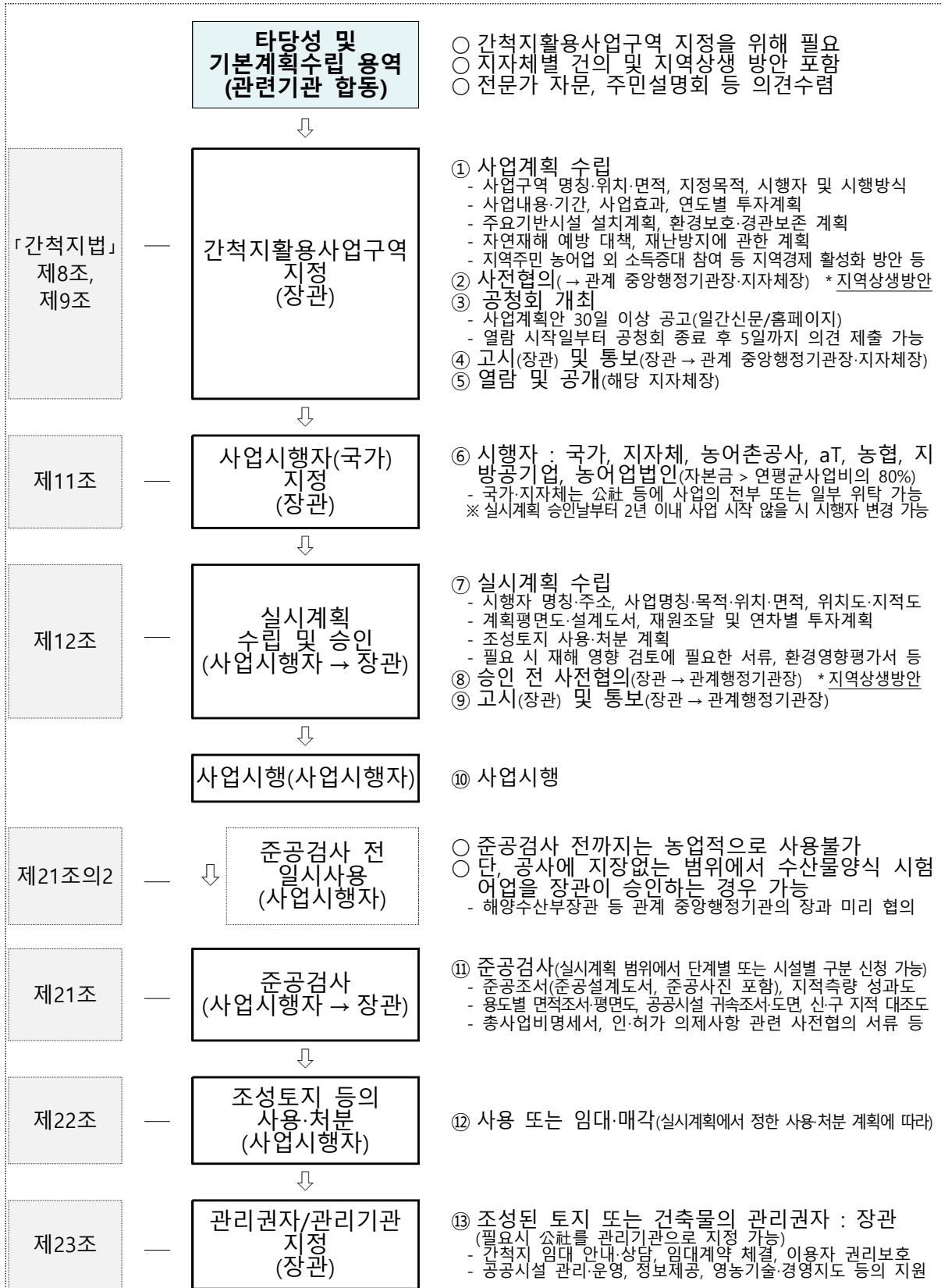
1. ~ 10.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 절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2. 5.

다만, 현재까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사례는 이 법의 제정(2012년 1월 17일)·시행(2013년 1월 18일) 이후 한 차례도 없음.

이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서 수행할만한 대규모 간척지활용사업이 아직 없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도 간척지 내 개발 및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임.

2)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어떠한 구역을 간척지활용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는 현행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됨.⁵⁾

이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⑤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행위제한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는 공용필요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⁶⁾

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전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의 목적 및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
8. 죽목(竹木)의 식재(植栽) 및 벌채(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349.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 행위 제한 >

구분	내용(세부내용)		
대상 지역	현행법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물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 굴착, 공유수면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
	5	토지 분할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의 식재 및 벌채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10.

그런데, 현행법 제10조는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규정함.

이에 따라 준공검사 이후 공사완료가 공고되었음에도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여전히 행위 제한 등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를 지정 해제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간척지활용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이 지속될 필요성이 없는 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해당 구역의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유사 입법례: 공사완료의 공고와 구역 지정 해제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환지(換地)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를 공고한 경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10.

2. 지원금 환수 시 준용규정 수정

현행법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u>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u>	② ----- ----- ----- <u>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징수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이므로, 개정안을 수용함.

2) 한국농어촌공사

개정된 「국세징수법」상 용어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1) 간척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도 현황

현행법 제22조는 사업시행자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도록 규정함.⁷⁾ 이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을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은 현행법에 따른 간척지의 이용자가 됨.⁸⁾

< 간척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도(법 제27조제3항) >

구분	내용	사례
지원 대상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 “이용자”	없음
지원 사업	①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없음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③ 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10.

현행법 제27조제3항은 이용자에 대하여 ①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업(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⁹⁾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적이 없어,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이 없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간척지의 이용자가 없으므로, 현행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9)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②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등 수출에 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 제28조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의 부정수급 또는 과오지급의 경우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게 됨.

이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2020. 12. 29.)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¹⁰⁾의 징수 등을 규율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¹¹⁾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것임.

그런데 「국세징수법」은 2020년 12월에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강제징수’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 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임.

개정안은 지원금 환수의 준용 규정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간의 법률 정비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1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3. 8. 6. 제정, 2014. 8. 7. 시행), 이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2020. 3. 24. 시행)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국세강제징수의 예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금 등의 급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 입법례: 환수에 관한 준용 규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4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및 제50조에 따른 의료지원비(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구성, 2025. 2. 10.

3.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다만, 개정안은 하위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낮으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임.

2)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함.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개정사항으로 구분되는데, ① 공사완료 공고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해제 사유에 추가하고, ② 지원금 환수의 준용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① 구역지정 해제 사유 추가의 경우, 현재까지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없고, 구역 지정의 해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행위 제한 등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있어 유리한 법률 개정임.

② 지원금 환수의 준용규정 정비의 경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단순 정비사항으로 볼 수 있어, 법률 시행을 위한 별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보임.

또한, 둘 모두 법률 개정에 따라 별도의 하위법령 개정 등의 작업이 요구되지 않고 조속한 시행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